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9 발의연월일: 2021. 1. 4.

발 의 자 : 임오경 · 김승원 · 김민철

이병훈ㆍ이해식ㆍ이수진비

최혜영 · 김남국 · 한병도

서영석 · 오영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도입 및 보호 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 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함으로써 사 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의 안내
-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 무 매뉴얼의 마련 및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
-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의 실시
-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 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용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조에서 같다)-----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 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 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 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 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 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음 각 호의-<신 설>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

	성의 안내
<u> <신 설></u>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업무 매뉴얼의 마련 및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
	<u>시</u>
<u><신 설></u>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의 실시
<u><신 설></u>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렁으로 정하는 필요한
	<u>조치</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